



2026년 「수출 물류비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려운 수출환경에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장애인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, 「수출 물류비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6일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

1

사업개요

□ 지원대상

○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 발급기업

*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(장애인기업의 확인)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

** 모집공고 마감일 및 사업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함

□ 지원규모 및 내용: 5개사(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예정)

○ 2026.1.1. 이후 발생한 수출 물류비(국제운임, 보험료, 추가할증료 등)에 대해 최대 5백만원, 80% 한도 지원(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제외)

* 지원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(소기업 80%, 중기업 70%)

연번	지원대상	세부항목	비고
1	국제운임	· 항공, 해상 운송료	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품 혹은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
2	보험료	· 운송에 따른 보험료	보험가입증서 필수
3	국제복합 운송료	·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서로 다른 국가 간 내륙 운송	출발지인 대한민국, 중간 기착국, 최종 도착국, 총 3개의 서로 다른 국가가 운송서류에 나타나야 함
4	추가할증료	· 유류할증료, 저유황할증료, 보안할증료, 성수기할증료	증빙 가능 비용 지원
5	국제특송 이용료	· DHL, FEDEX 등 운송료·할증료 · EMS를 통한 운송료·할증료	특송업체 운임 및 할증료 등

□ 지원항목

-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에 대해 최대 5백만원, 80% 한도 지원(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제외)
- * 인코텀즈 E조건(EXW) 및 F조건(FCA, FAS, FOB)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, 지원 불가
- 1회 수출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건에 한하여, 업체당 최대 10건 이내로 지원
- 2026.1.1.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집행 완료 후, 지출 증빙자료를 지급신청마감일(2026.11.15.) 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
- * 정산은 입금확인중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표기환율 적용
- ** 입금확인중에 적용환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입금 당일 하나은행 외환포털 내 최초 고시회차 매매 기준을 적용(견적 금액이 아닌 실지출 금액 기준 지원)

[정산 가능/불가 항목]

구분	세부내용
필수 충족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(수출신고필증 기준) ·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(CFR-CIF-CPT-CIP), D조건(DAP-DPU-DDP)에 한해 지원
정산 가능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항공 ·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(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) ④ 추가할증료 : 유류할증료, 저유황할증료, 보안할증료, 성수기할증료 ⑤ 국제특송 이용료 ⑥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= ①+②+③+④+⑤ * (참고) 최종정산예정금액 = ⑥ × 80%(기업당 5백만원 한도)
정산 불가 항목 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· 현지 통관료 :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· 풀필먼트 서비스 : 수입대행, 입출고, 창고지원, 배송 등 *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-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·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(위험물 취급수수료 등) · 국내 운임과 국외 운임 지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·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· 관세,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· 각종 문서 송달비용 ·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(해외→해외) 운송료 ·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· 무상거래 샘플운송 ·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* (유의)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, 정산 가능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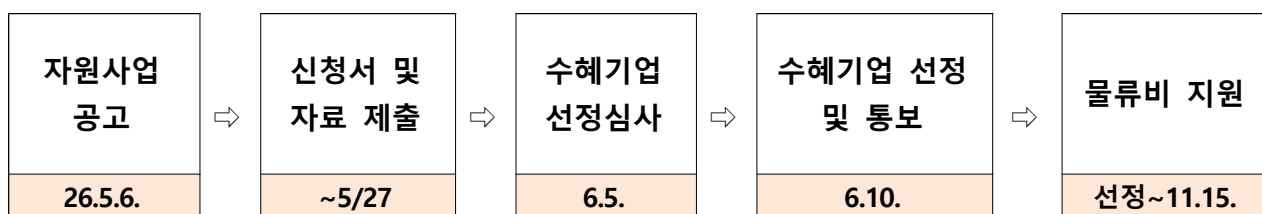
3 신청접수

□ **신청기간:** 2026.5.6.(수) ~ 2026.5.27.(수) 18:00까지

□ **신청방법:** 내방, 등기우편, 이메일(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) 접수

접수·문의처	
이메일	nsh@debc.or.kr (신청 후 접수 확인 요망) * 26년도_수출 물류비 지원_000(신청 기업명)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제출 ** 제출 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
주소	(07230)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
문의	기업성장부 수출지원사업 담당자 Tel) 02-2181-6532

□ 지원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참가제한

요건	세부내용
① 중복 수혜	○ 동일 신청(지원) 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,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제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른 지원금 환수(부당이익금(이자율포함) 및 제재부가금(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)을 부과할 수 있음
② 휴·폐업	○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③ 장애인기업확인서 만료	○ 모집공고 마감일 및 사업종료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
④ 세금 체납	○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
* 선정 이후라도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의 미제출·기재 착오·연락 두절·신청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
- 센터는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센터가 고지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
- 선정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 없는 연락 두절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 * 제품 등록 및 업데이트 부진, 품질 방치, 물류 대응 및 배송 지연 등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르며,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지원 후 수출실적, 매출실적 등 사후 조사에 적극 협조
- 향후 중복지원 및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 참여제한 3년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금 등의 환수 진행 예정

4

선정심사

□ 선정방법

- 심사는 수출준비도, 국내·외 인증, 수출실적, 제품경쟁력, 수출추진 계획, 각종 가점사항 등에 대해서 평가
 *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**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정량평가 → 정성평가 → 가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며, 모든 항목이 동일한 경우 최근 3개년 해당 사업의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함
- 다음과 같은 센터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(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) 우선순위에서 배제

센터 직접지원 사업

①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④ 1인사업주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⑤ 업무지원인 서비스(경영지도형, 의사소통형만 해당) 지원사업 ⑥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사업 ⑦ 창업점포지원사업 ⑧ 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⑨ 창업사업화지원사업

* 단,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

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

-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%이상 상향한 경우(해당연도, 해당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)
-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%이상 상향한 경우(해당연도,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)
-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(사업장 가입자 명부)

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선정평가표

No		업체명
----	--	-----

구분	평가항목	평가등급					평점
정량 평가 (30점)	수출실적(10점)	10만불 이상	10만불 미만 ~5만불 이상	5만불 미만 ~3만불 이상	3만불 미만	없음	
		10	8	6	4	2	
	수출준비도(10점)	외국어 홈페이지, 외국어 카탈로그, 외국어 홍보영상 등 1개 이상 보유					
	지식재산권(5점)	해외지식재산권 보유	국내지식재산권 보유		없음		
		5	3		1		
	국내외 인증 보유 여부(5점) (NET, CE, FDA 등)	보유			미보유		
		5			1		
정성 평가 (70점)	수출제품 경쟁력 (25점)	제품의 특성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, 기술력 등				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불량	
		25~21	20~16	15~11	10~6	5~1	
	수출추진계획 (15점)	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수출 추진계획				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불량	
		15~13	12~10	9~7	6~4	3~1	
	수출추진전략 (15점)	수출국가 진출전략, 시장환경 분석 등				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불량	
	15~13	12~10	9~7	6~4	3~1		
지원효과성 (15점)	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						
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불량		
	15~13	12~10	9~7	6~4	3~1		
가점 항목 (각 항목 1점, 최대 5점) <small>*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</small>	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증(장애의 정도가 심한) 장애인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 (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기업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(만39세이하)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센터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					
심의점수 합계(105점)		()점					

평가의견	
------	--

20 . . .
심사위원: (서명)